

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22. 6. 27. 조례 제342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)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4조에 따라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심의회의 운영 등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(간사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의회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6조(수당 등)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